

지부 규정

제 1 조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 3 조에 의거하여 지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.

제 2 조 광역시 및 각 도의 필요한 곳에 정회원 50 명 이상으로 지부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 3 조 지부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.

제 4 조 지부는 본회의 총회,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

제 5 조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.

지 부 장 1 명

부지부장 2 명

기타 임원 약간명

제 6 조 지부의 임원은 지부의 규약에 따라 선출하고, 지부장은 지부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
제 7 조 지부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 8 조 지부장은 당해년도 12 월에 다음해의 임원 명단과 사업계획을, 그리고 2 월에는 전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.

제 9 조 지부의 규약은 지부에서 작성하되,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10 조 본회는 지부에 소속하는 정회원 및 학생회원의 회비의 1/3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부의 운영비로 보조할 수 있다.